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1종)			
(신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파. 개인정보공개 에 관한 사항 (1) 문서의 열람 (2) 문서의 정정 (3) 문서의 복사	 1건1회 1건 1매당	 100원 100원 100원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5. 11.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 10. 1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95. 10. 13.
- 다. 상정일자: 제3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춘기 총무과장)

- 가. 제안이유.  
호적법시행규칙(1995. 6. 5. 대법원규칙 제1369호)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종전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부과토록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던 것이 19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배치되었던 종전규정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95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등이 근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까지 적용된 과태료부과기준은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요지(채재선 위원): 개정조례안 과태료 부과면제규정 제4조3항에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 데, 담당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과태료부과를 면제해 줄 소지는 없는가?
- 답변요지(문엽승 시민봉사실장): 현재까지 구청장이 면제해 준 실적은 없고, 이 조항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구청장이 면제해 주는 규정임.
- 질문요지(정만직 위원): 호적법시행규칙이

'95. 6. 5 기개정되었음에도 뒤 늦게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답변요지(문엽승 시민봉사실장): 입법예고 기간동의 기일이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다소 조례개정 제안이 늦은 감을 인정함.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사항: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년월일: 1995. 10. 10.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호적법 시행규칙 (1995. 6. 5. 대법원규칙제1369호)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종전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등을 참작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부과토록 호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

3. 개정근거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  
○지방자치법 (1995. 8. 4. 법률제4959호) 제15조

4. 조례(안): 별첨

5. 예산 조치 필요성 여부: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중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과면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 5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 6조중 “해태 이유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 7조중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의 조제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부과대상) 과태료부과대상은 <u>별표1과 같다.</u>	제3조 (부과대상)..... <u>별표와 같다.</u>
제4조 (부과기준및면제) ①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2와 같다.</u>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4조 (부과면제)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이민,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제5조 (부과등)①구청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의 과태료징수부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과등)(삭제)  ①(현행 제2항과 같음)  ②(현행 제3항과 같음)  ③(현행 제4항과 같음)  ④(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 (사전징수)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u>해태이유서</u>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제6조 (사전징수)..... ..... <u>신고서</u> .....

현 행	개 정 안
<p>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p> <p>제7조 (납부독촉)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 무자가 법제132조의2 제2항 및 규칙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입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제5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 (시행세칙) (생략)</p>	<p>.....</p> <p>.....</p> <p>.....</p> <p>제7조 (납부독촉).....</p> <p>.....</p> <p>.....</p> <p>.....</p> <p>.....</p> <p>.....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p> <p>.....</p> <p>.....</p> <p>제10조 (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1.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10. 23.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 10. 24.
  - 다. 상정일자 : 제3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5.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춘기 총무과장)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아현 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현동 96-2에서 아현동 417-7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일 아현제1동사무소가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
----------	----

제출년월일 : 1995.10.23.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제1동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동조례 별표1에 규정되어있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주요골자  
○ 아현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현동 96-2에서 아현동 417-7로 변경 (안 제4조관련 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 제6조 및 제15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아현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아현동 96-2”를 “아현동 417-7”로 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